

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지원됨으로 국고보조가 적절

- 재편입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포괄보조기능을 확대하는 한편,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한 기준보조율 차등적용

## □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

- 분권교부세를 경상사업 중심으로 운용하고 2010년 지방교부세와의 통합을 염두하면 산정방식의 부분적 개선이 불가피함
- '06년부터 광역단체 일괄교부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여 기피시설에 대한 서비스공급을 확충하고 재원의 일정분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한바 있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형평화기능은 더욱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됨. 특히, 최소한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위 National Minimum에 입각한 다음의 정책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
  - 모호한 비경상수요사업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
  - 1인당 기준으로 최소교부액을 적용함으로써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초단체에 대한 적정교부액 확충
  - 단계적으로 불교부단체 적용·확대방안을 적극검토
  - 재정력역지수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
  - 특정 시도나 계층에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, 운용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원활한 시·도비 지원을 유도

내용문의 : 조기현 수석연구원(3488-7325)

배포문의 : 조성사업팀 김선미(3488-7361)